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유럽연합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내 ‘지리적 표시’ 일부 변경하기로 상호 합의함

- 자유무역협정의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협정서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음. 협정은 지리적 표시를 담당하는 작업반(the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Indications)의 합의에 따라서 부속서의 10-A와 10-B에 의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를 추가 · 수정 · 삭제하는 것을 허용함. 단, 표시된 지리를 삭제하는 것은 원산지 당사자에 의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 명칭이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지리적 표시로 간주되지 않는 명칭일 경우임. 지리적 표시에 관한 EU-한국 작업반(EU-Korea 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Indications)의 주도 하에 오랜 협의의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개정안에 합의함.
- 지리적 표시 추가사항들: 두 당사자는 유럽연합의 44개 지리적 표시와 한국의 41개 지리적 표시를 부속문서 10-A와 10-B에 추가하기로 합의함. 유럽연합은 한국의 41개 지리적 표시 추가 요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으며, 한국 역시 유럽연합의 44개 지리적 표시 추가 요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함.¹⁾ 현재는 협정서의 개정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1) <https://www.tmdn.org/giview/> 사이트에 접속해 국가(Country)에서 한국(South Korea)을 지정한 후 검색(Search)을 누른 다음, 우선 일자(Priority Date)를 2023.1.1.로 설정할 시에 한국에서 추가를 요청한 41개의 지리적 표시들을 볼 수 있음. 한편 유럽연합 측에서 추가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들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음.

- 지리적 표시 수정사항들: 유럽연합은 한국에 명칭 변경을 거친 4개의 지리적 표시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유럽연합은 ‘Originalilietuviška degtinė/vodkalituanienne original’을 ‘Originalilietuviška degtinė/Original Lituaniene’(오리지널 리투아니아 보드카)로 변경할 것을 요청함.
- 유럽연합의 삭제 요청사항들: (1) 유럽연합은 연합국 내 스페인어 표기 보호가 중단됨에 따라 ‘Pacharán(파카란)’이라는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함. (2) 유럽연합은 같은 이유로 증류주(spirit drinks) 가운데 ‘Polish Cherry(폴란드 체리)’라는 이름을 제거할 것을 요청함.
- 한국의 삭제 요청사항들: (1) 한국은 자국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Muan White Lotus Tea(무안백련차)’와 ‘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청양고춧가루)’의 삭제를 요청함. (2) 한국은 ‘Seosan Garlic(서산마늘)’과 ‘Yeoju Sweet Potato(여주고구마)’의 지리적 표시를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함.
- 두 당사자 간의 삭제 합의 사항들: 두 당사자는 2021년 1월 1일부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의 ‘Scotch Whisky(스카치 위스키)’를 협정의 부속서 목록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개정안 적용일: 위와 같은 지리적 표시의 개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외교적인 합의 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부속문서 10-A 및 10-B의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328.01.0157.01.ENG&toc=OJ%3AL%3A2022%3A328%3ATOC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2022X1222%2801%29&qid=1674778738270>

2. 시사점

- 상품명은 통관 및 검역 시에 라벨링 또는 인증서의 적절성 문제, 상품 분류의 문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EU 소속 국가들에 위의 품목들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상품 표기(또는 상품명)의 수정사항에 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렇듯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여 제품, 포장지, 인증서 등에 적절한 명칭을 표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와 더불어서 EU와 자국 간 무역협정서에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유럽연합, 아족시스트로빈을 포함한 4가지 살충제의 최대 잔류한계의 기준 수정

- 유럽식품안전청은 특정 식료품에 대한 아족시스트로빈(azoxystrobin), 프로술포카브(prosulfocarb), 세닥산(sedaxane), 발리페날레이트(valifenalate)의 최대 잔류량 기준(maximum residue levels: MRL)을 수정하기로 함. 이 과정에서 당국(‘유럽식품안전청’)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정한 새로운 Codex 최대 잔류 허용 기준(Codex maximum residue limits: CXL)을 일부 적용하기로 함. 당국은 구아바의 아족시스트로빈과

양파, 샬롯(shallots, 양파의 한 종류), 토마토 및 가지의 발리페날레이트에 대한 CXL을 평가하고 유럽연합 소비자에게 안전함을 확인하고 CXL을 MRL로 적용함.

- 위의 식료품 외에도 유럽식품안전청은 유채/카놀라 종자 및 아마씨의 아족시스트로빈 MRL, 허브 및 식용 꽃의 프로술포카브 MRL, 감자의 세닥산 MRL의 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음. 그에 따라 당국은 위의 식료품에 함유된 살충제의 소비자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하고 제안된 MRL을 평가함. 결론적으로 제출된 데이터로 볼 때, 아마씨의 아족시스트로빈 MRL 수치를 수정해야 할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기존의 MRL을 유지하기로 함. 다른 한편 허브 및 식용 꽃의 프로술포카브의 MRL의 경우, 최근 제출된 데이터에 입각할 때 소비자 노출 정도에서 큰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MRL 수치를 높여도 된다고 결론지음.

2. 변동사항

- 위의 재평가 및 수정을 거친 결과는 다음의 표로 제시될 수 있음.

살충제 종류	수정 대상의 식료품	수정된 MRL (mg/kg)
아족시스트로빈	-구아바(Guavas)	구아바의 아족시스트로빈 MRL: 0,2 (CXL 채택)
	-유채/카놀라 종자 (Rapeseeds/canola seeds)	유채/카놀라 종자의 아족시스트로빈 MRL: 0,7
	-아마씨(Linseeds)	아마씨의 아족시스트로빈 MRL: 0,4 (MRL 유지)
프로술포카브	-허브 및 식용 꽃 (herbs and edible flowers)	허브 및 식용 꽃의 프로술포카브 MRL: 20 (MRL 상향 조정)
세닥산	-감자(potatoes)	감자의 세닥산 MRL: 0,15
발리페날레이트	-양파(Onions)	양파의 발리페날레이트 MRL: 0,5 (CXL 채택)
	-샬롯(Shallots)	샬롯의 발리페날레이트 MRL: 0,5 (CXL 채택)
	-토마토(Tomatoes)	토마토의 발리페날레이트 MRL: 0,4 (CXL 채택)
	-가지(eggplants)	가지의 발리페날레이트 MRL: 0,4 (CXL 채택)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3.017.01.0056.01.ENG&toc=OJ%3AL%3A2023%3A017%3ATOC

3. 기타 주의사항 등

- 위 개정안은 2023년 2월 26일부로 시행됨. 따라서 해당 일자부터 관련 식료품에 대한 검열이 강화될 것인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서 위의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에는 변경된 수치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과 적용일로부터 위의 규정을 엄수할 것이 요구됨.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 - 기준월(1월) 보고된 사례 없음